

제422회 정례회

' 24. 11. 19.(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아동생활시설' 및 '보호아동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5조)
-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보호아동 등에 대한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아동생활시설 문화활동비(용돈) 지원을 위한 간담회('24. 8. 13.)에서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 및 건강, 학습,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간담회 참석자: 시도의원,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 기관장 등 20여 명

- 특히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용돈)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4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통해 지자체 및 해당 시설에 지원을 권고했으며,

- 현재 충북, 울산, 강원,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이미 시도 예산으로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

	조항	규정내용(조 제목)
총칙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체규정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지원 사업
	제7조	문화활동비 지급
보칙규정	제8조	사무의 위탁
부칙규정	부칙	시행일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아동생활시설’ 과 ‘보호아동 등’ 의 용어를 정의함.

- '아동생활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아동복지 시설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보호대상 아동이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 정의함.
- '보호아동 등'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생활시설'이라 함)에서 보호 중인 사람으로 정의함.
- 본 조례안에서 "보호아동 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3)에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인지하고 있음.
 - 또한 아동생활시설 보호대상아동은 과거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했던 것이 법 개정('21.12.21.)에 따라 현행 법상 아동이 아닌 청소년 및 청년의 연령대인 25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

※청소년: 9~24세(청소년기본법) / 청년: 19~34세(청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 법	현행 법 [시행 2021.12.21.]
<p>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p>	<p>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물론 입법 규정 상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타 법령 및 조례와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어 정의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례로 제한됨) 그러나

3)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이란 용어가 갖고 있는 인지적 보편성으로 인해 조문 이해 시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보호아동'에 의존명사인 '등'을 넣어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단 지원계획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복지법」 제8조4)에 따라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보호아동 중 초등학생 이상 및 그 연령대 해당자에게 용돈 개념의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음.
 - 현재 시설 보호아동 등의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급 금액 및 방식 등의 기준이 될만한 가이드라인도 없음.
 - 이에 충청도 내 33개 시설(아동양육시설 10개소, 공동생활가정 23개소)마다 지급 금액도 다르고 일부 연령대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 시설도 있음.
 - 따라서 충청도 차원의 문화활동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충청도 내 시설 보호아동 등에 대한 문화활동비 지급액 및 방식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단, 도에서는 안 제7조제4항에 따른 문화활동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시, 문화활동비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시설 보호아동 등이 올바른 소비 습관 및 경제관 확립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4) 「아동복지법」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및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해야 할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도 담당부서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시설 보호아동 지원 및 관리

차. 시설보호아동 용돈 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용돈 지원 권고

※ 지자체별 용돈 지원 현황 (2024.1월 기준)

시도	월 지원 기준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이상
서울		3만원	5만원	6만원	10만원
부산		2만2천원	3만	4만 3천원	
대구		1만5천원	3만원	4만원	6만원
인천	1만3천원	1만5천원	2만5천원	3만원	
광주		3만원	4만원	5만원	
대전		1만5천원	3만원	4만원	
울산	미지원				
세종		1만5천원	3만원	4만원	5만원
경기		1만5천원	2만원	4만원	
강원	미지원				
충북	미지원				
충남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전북	1만원	1만5천원	3만원	4만원	4만원
전남		3만원	5만원	8만원	14만원
경북		1만6천원	2만원	2만5천원	
경남	미지원				
제주		3만원	5만원	7만원	